

# 인천광역시서구

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http://www.seo.incheon.kr/>

선 람	기관위원장

제1110호 2015. 08. 24.(월)

## 차 례

### 고 시

- 인천광역시서구 고시 제2015-124호 인천광역시 서구 도로명주소 고시 ----- 1
- 인천광역시서구 고시 제2015-125호 인천도시관리계획(연희3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 4

### 공 고

- 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2015-1133호 인천광역시 서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6
- 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2015-1134호 인천광역시 서구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 20
- 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2015-1160호 인천광역시 서구 수입증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26
- 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2015-1161호 인천광역시 서구 수입증지 조례 시행규칙 폐지규칙(안) ----- 36

인천광역시서구 고시 제2015-124호

# 인천광역시 서구 도로명주소 고시

도로명주소법 제1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제4항, 제24조 제1항에 따라 건물 등에 부여·변경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5. 08. 21.

##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 부여·변경 도로명주소 : 인천 서구 가좌로95번길 14외 38건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주소 부여(변경)사유	도 로 명 고 시 일	도 로 명 부 여 사 유
		별 도 열 략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천시 서구청 토지정보과(☎560-4830)에 문의 또는 도로명주소 안내 홈페이지([www.juso.go.kr](http://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

- 도로명주소는 2015. 08. 21일자로 고시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1항에 의거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됩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

○ 도로명주소 변경 등

-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변경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의3 및 제9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도로명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제7항에 의거 당해 도로명이 고시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참고사항

- 공동주택의 경우 종전주소의 공동주택명, 동·호와 도로명주소의 상세주소는 공법관계의 각종 공부상 기재된 주소로 한다.

인천광역시 서구 도로명주소 부여 고시조서

고시일 : 2015-08-21

연번	지번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고시일	도로명 부여사유	비고
1	인천광역시 서구 가좌동 455-14	인천광역시 서구 가좌로95번길 14 (가좌동)	2009-09-22	가좌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950m지점에서 왼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2	인천광역시 서구 가좌동 455-15	인천광역시 서구 가좌로95번길 16 (가좌동)	2009-09-22	가좌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950m지점에서 왼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3	인천광역시 서구 가좌동 455-16	인천광역시 서구 가좌로95번길 18 (가좌동)	2009-09-22	가좌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950m지점에서 왼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4	인천광역시 서구 가좌동 455-10	인천광역시 서구 가좌로95번길 8 (가좌동)	2009-09-22	가좌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950m지점에서 왼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5	인천광역시 서구 오류동 1639-11	인천광역시 서구 검단천로356번길 43 (오류동)	2012-10-25	검단천로 시작지점부터 3,560m지점에서 오른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6	인천광역시 서구 경서동 729-12	인천광역시 서구 경서로55번길 10-23 (경서동)	2009-09-22	경서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550m지점에서 왼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7	인천광역시 서구 원당동 855-1	인천광역시 서구 고산로 12-2 (원당동)	2008-12-31	고산이라는 지명을 따 명명	
8	인천광역시 서구 원당동 855-7	인천광역시 서구 고산로 12-21 (원당동)	2008-12-31	고산이라는 지명을 따 명명	
9	인천광역시 서구 불로동 267	인천광역시 서구 고산후로 244-35 (불로동)	2008-12-31	고산후라는 자연부락의 이름을 따 명명	
10	인천광역시 서구 원당동 830-1	인천광역시 서구 고산후로174번길 22 (원당동, 감자꽃 어린이집)	2008-12-31	고산후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1,740m지점에서 오른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11	인천광역시 서구 오류동 518-2	인천광역시 서구 단봉로 137 (오류동)	2009-09-22	봉수대로에서 나와 단봉초등학교 앞을 지나는 도로	
12	인천광역시 서구 연희동 778-17	인천광역시 서구 담지로104번길 21 (연희동)	2010-11-11	도로의 기점이 접한 대로, 로의 기초번호로 도로명부여	
13	인천광역시 서구 오류동 1629-10	인천광역시 서구 도망로 133 (오류동)	2012-10-25	"아무지고 탐스럽다" 는 순우리말에서 착안	
14	인천광역시 서구 검암동 670-4	인천광역시 서구 도요지로224번길 14 (검암동, 뉴첼시빌1차)	2009-09-22	도요지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2,240m지점에서 오른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15	인천광역시 서구 오류동 1643-7	인천광역시 서구 마중로 177 (오류동)	2012-10-25	"나가서 맞이한다" 는 순우리말에서 착안	
16	인천광역시 서구 가좌동 173-470	인천광역시 서구 보도진로 64 (가좌동)	2009-09-22	인천교가 생기기 전 이 부근에 있던 보도진 나무의 이름을 따서 명명 보도진 나무란 물이 빠질때 걸어서 건널 수 있는 나무라는 뜻	
17	인천광역시 서구 오류동 1640-1	인천광역시 서구 보듬5로 5 (오류동, 오덕프라자)	2012-10-25	보듬로에서 다섯번째 분기되는 도로	
18	인천광역시 서구 경서동 981-146	인천광역시 서구 보석로18번길 6 (경서동)	2013-07-30	보석로 시작지점부터 약 180m지점에서 오른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19	인천광역시 서구 경서동 981-110	인천광역시 서구 보석로18번안길 25 (경서동)	2013-07-30	보석로18번길에서 안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20	인천광역시 서구 금곡동 336-19, 336-13	인천광역시 서구 봉수대로1581번길 5-15 (금곡동)	2009-07-10	봉수대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1,5810m지점에서 왼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21	인천광역시 서구 원창동 21-24, 21-26, 21-2	인천광역시 서구 봉수대로501번길 46 (원창동)	2009-07-10	봉수대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5,010m지점에서 왼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22	인천광역시 서구 원창동 437-33	인천광역시 서구 북향로363번길 36 (원창동)	2013-12-02	북향로 시작지점에서 약 3,630m지점에서 왼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23	인천광역시 서구 검암동 669-8	인천광역시 서구 승학로372번길 21 (검암동, 뉴첼시빌2차)	2009-09-22	승학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3,720m지점에서 오른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24	인천광역시 서구 신현동 143-19	인천광역시 서구 연곡로327번길 4-8 (신현동)	2009-09-22	연곡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3,270m지점에서 왼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25	인천광역시 서구 마전동 991-17	인천광역시 서구 완정로156번안길 9-14 (마전동)	2008-12-31	완정로156번길의 안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26	인천광역시 서구 원당동 821-13	인천광역시 서구 원당대로823번길 6-11 (원당동, 아라#1)	2008-12-31	원당대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8,230m지점에서 왼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27	인천광역시 서구 원당동 821-14	인천광역시 서구 원당대로823번길 6-9 (원당동, 아라#1)	2008-12-31	원당대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8,230m지점에서 왼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28	인천광역시 서구 경서동 1003-7	인천광역시 서구 이화로26번길 11 (경서동)	2012-10-25	이화로 시작지점부터 260m지점에서 오른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29	인천광역시 서구 경서동 1003-8	인천광역시 서구 이화로26번길 9-1 (경서동)	2012-10-25	이화로 시작지점부터 260m지점에서 오른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30	인천광역시 서구 오류동 1573-6	인천광역시 서구 정서진4로 28 (오류동)	2012-10-25	우리구 해님이 명소 정서진 명칭을 반영한 정서진로에서 분기되는 네번째 도로	
31	인천광역시 서구 연희동 766-9	인천광역시 서구 청라라임로122번길 5 (연희동)	2012-03-30	청라라임로의 시작점에서 1,220m지점에서 오른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32	인천광역시 서구 경서동 967-1	인천광역시 서구 청라루비로42번길 6-9 (경서동)	2012-03-30	청라루비로의 시작점에서 420m지점에서 오른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33	인천광역시 서구 경서동 849-12	인천광역시 서구 청라커널로319번길 3-16 (경서동)	2012-03-30	청라커널로의 시작점에서 3,190m지점에서 왼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34	인천광역시 서구 당하동 1084-1	인천광역시 서구 청마로 55 (당하동, 백석초등학교)	2008-12-31	청마라는 자연부락의 이름을 따 명명함	
35	인천광역시 서구 가정동 T1블럭	인천광역시 서구 청중로478번길 6 (가정동, 인천가원초등학교)	2012-10-25	청중로 시작지점부터 4,780m지점에서 오른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인천광역시 서구 도로명주소 변경고시 조서**

고시일 : 2015-08-21

연번	지번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주소 변경사유	도로명고시일	도로명부여사유
		변경전 도로명주소	변경후 도로명주소			
1	인천 서구 대곡동 114-5	인천광역시 서구 대곡로326번길 28 (대곡동)	인천광역시 서구 대곡로368번길 50 (대곡동)	건물군 분할	2013-07-30	대곡로 시작지점부터 약 3,680m지점에서 오른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2	인천 서구 오류동 1631-8	인천광역시 서구 도담로 161 (오류동, 인성에에앤티)	인천광역시 서구 도담6로 10 (오류동, 인성에에앤티)	건물군 분할	2012-10-25	도담로에서 여섯번째 분기되는 도로
3	인천 서구 금곡동 236, 236-1	인천광역시 서구 봉수대로1531번길 14 (금곡동)	인천광역시 서구 봉수대로1531번길 20 (금곡동)	건물군 분할	2009-07-10	봉수대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1,5310m지점에서 왼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4	인천 서구 마전지구12블럭2로트	인천광역시 서구 검단로623번안길 5 (마전동)	인천광역시 서구 검단로623번안길 6 (마전동)	건물번호 변경	2008-11-21	검단로623번길의 안쪽으로 분기된 도로

인천광역시서구청시 제2015-125호

## 인천도시관리계획(연희3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인천도시관리계획(연희3지구 지구단위계획)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고시하고, 같은법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관계서류는 서구청 도시개발과(☎ 560-4763)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15. 8. 24.

###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1. 결정(변경)취지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 마목의 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
2. 위      치 : 서구 심곡동 293-1번지 일원
3.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 가.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조서 (변경없음)
  - 나. 용도지역·용도지구의 세분 및 세분된 용도지역·용도지구간의 변경에 관한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조서 (변경없음)
  - 다.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변경없음)
  - 라.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구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 단독주택용지의 가구 및 획지 결정(변경) 조서

연 번	기 정					변 경					
	가구 번호	가구면적 (㎡)	획지		비 고	가구 번호	가구면적 (㎡)	획지		비 고	
			위치	면적(㎡)				위치	면적(㎡)		
1	76	3,440.8	1	216.0		76	3,440.8	1	216.0		
			2	340.9				2	2,555.7		
			3	1,213.6				3	439.8		
			4	559.0							
			5	882.0				2필지로대지 분할(권장)			
			6	96.3							
			7	133.0							

※ 서구 심곡동 293-1, -5, -6, -7, -8번지 획지분할 및 합병

## ○ 단독주택용지의 가구 및 획지 결정(변경) 사유서

가구번호	위치	변경내용	변경사유
76	2, 3, 4, 5 → 2, 3	획지분할 및 합병	· 분할가능선에 따라 건축완료 된 획지분할 · 건축규모 확장을 위한 획지 합병

마. 건축물에 대한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배치·형태·색채·건축선에 관한 도시계획결정(변경) 조서 (변경 없음)

바. 기타사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변경 없음)

4. 고시도면 : 별첨(비치된 장소의 고시도면과 같음 : 구보계재 생략)

인천광역시 서구 공고 제2015 - 1133호

## 인천광역시 서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인천광역시 서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내용을 「인천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5년 8월 19일

## 인 천 광 역 시 서 구 청 장

### 1. 개정이유

-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주민자치위원회 사업 운영 예산 지원 근거 마련 및 주민자치위원 교육이수 의무화
- 알기 쉬운 법령용어 및 띄어쓰기 등 재정비

### 2. 주요내용

- 주민자치위원회 사업운영 예산지원 내용 구체화
  - 제7조(운영) 제5항
- 주민자치위원 교육이수 의무화
  - 제18조 제5항

### 3. 의견제출

이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나 구두 의견을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참조 : 총무과장)에게 2015. 9. 9.(수)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우)22726 인천광역시 서구 서곶로 307(심곡동) / ☎ 032-560-4515,  
FAX 032-560-2710 ]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 4. 참고사항

- 인천광역시 서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인천광역시 서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 의결주문

인천광역시 서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별지와 같이 개정한다.

## 2. 제정이유

- 「지방재정법」개정으로 주민자치위원회 사업 운영 예산 지원 근거 마련 및 주민자치위원 교육이수 의무화

## 3. 주요내용

- 주민자치위원회 사업운영 예산지원 내용 구체화
- 주민자치위원 교육이수 의무화
- 중복문구 삭제
-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일부 조문 정비

## 4. 참고사항

- 가. 개 정 안 : “별지 참조”
- 나. 신.구조문대비표 : “별지참조”
- 다. 예산수반사항 : “해당 없음”
- 라. 관계 법령 발췌 : “「지방재정법」 제32조의2”

## 인천광역시 서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서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자치법”을 “「지방자치법」”으로 한다.

제6조제4항 중 “기타 재정형편상”을 “그 밖의 재정형편 상”으로 한다.

제7조제3항 중 “의해 지정된 자”를 “따라 지정된 사람”으로, “제10조제5항의 규정에 의해”를 “제10조제5항에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자치센터 건전한 운영과 발전을 위해 운영비 등 필요한 예산을 적극적으로”를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전부 또는 일부를”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부터 제2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주민자치 건전한 발전을 위한 운영비
2.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한 자치센터별 음악회 및 축제 등 개최 비용

제7조제8항 중 “구역내”를 “구역 내”로 한다.

제10조제2항 중 “제1항중”을 “제1항 중”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범위내”를 “범위”로 한다.

제12조제2항 중 “관할구역내”를 “관할구역 내”로 한다.

제13조 전단 중 “범위안”을 “범위”로 하고, 같은 조 후단 중 “범위안”을 “범위”로 한다.

제14조제1항 중 “3월전까지”를 “3개월 전까지”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의

한”을 “따른”으로 한다.

제16조제3항 중 “의한”을 “따른”으로 한다.

제17조제1항 중 “부위원장 각 1인”을 “부위원장 각 1명”으로, “포함하여 25인”을 “포함하여 25명”으로, “당해”를 “해당”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의하여”를 “따라”로, “선정된 자”를 “선정된 사람”으로, “자”를 “사람”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당해”를 “해당”으로, “추천하는 자”를 “추천하는 사람”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2. 공개모집 방법에 따라 선정된 사람

제17조제3항 중 “의한 위원 위촉시 10인”을 “따른 위원 위촉 시 10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의한”을 “따른”으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중 “당해”를 “해당”으로, “종사하는 자”를 “종사하는 사람”으로, “자”를 “사람”으로 한다.

제18조제5항 중 “각종 교육·연수 등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를 “각종 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19조제1항 중 “1인”을 “1명”으로 한다.

제20조제1항제1호 중 “당해”를 “해당”으로, “관할구역외”를 “관할구역 외”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6월이상”을 “6개월 이상”으로, 같은 항 제6호 중 “기타”를 “그 밖의”로 한다.

제21조제2항 중 “의한”을 “따른”으로 한다.

제23조 단서 중 “범위안”을 “범위”로 한다.

제2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4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u>지방자치법</u>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주민편의 및 복리증진을 도모하고 주민자치기능을 강화하여 지역공동체 형성에 기여하도록 하기 위하여 동에 두는 주민자치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주민자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1조(목적) ----- 「<u>지방자치법</u>」----- ----- ----- ----- ----- ----- ----- ----- ----- -----</p>
<p>제6조(시설 및 프로그램) ① ~ ③ (생략)</p> <p>④구청장은 동 주민센터가 협소하거나, 임차한 건물, <u>기타 재정형편상</u> 시설 등의 설치가 곤란한 경우에는 재정계획이 포함된 연차별 시설 등의 설치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p>	<p>제6조(시설 및 프로그램) ① ~ ③ (현행과 같음)</p> <p>④----- -----<u>그 밖의 재정형편상</u>----- ----- ----- -----</p>
<p>제7조(운영) ① · ② (생략)</p> <p>③위원회는 제2항에 <u>의해 지정된 자</u> 중 소속공무원을 제외한 위원회의 위원 또는 자원봉사자에게는 업무량과 근무시간 등을 감안하여 <u>제10조제5항의</u> <u>규정에 의해</u> 수강료 징수액 중 일정금</p>	<p>제7조(운영) ① · ② (현행과 같음)</p> <p>③-----<u>따라 지정된 사람</u>----- ----- ----- -----<u>제10조제5항에 따라</u>-----</p>

액을 봉사활동비로 지급할 수 있다.

④ (생 략)

⑤구청장은 자치센터의 건전한 운영과 발전을 위해 운영비 등 필요한 예산을 적극적으로 지원 하되, 제10조에 따라 징수 가능한 수강료의 수입 총액을 감안하여 적정 수준의 예산을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신 설>

<신 설>

⑥·⑦ (생 략)

⑧구청장과 동장은 관할 구역내 자치센터와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단체 등과의 연계방안을 적극 강구하여야 한다.

제10조(사용료 등) ① (생 략)

②제1항중 사용료는 자치센터의 시설·장비 등을 이용하는 경우로서 동장이 징수하며, 수강료는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경우로서 위원회에서 징수한다.

③사용료 등의 징수범위와 요율, 감면대상 등의 결정은 별표 1, 별표2로 정하는 기준과 범위

④ (현행과 같음)

⑤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전부 또는 일부를 -----

1. 주민자치 건전한 발전을 위한 운영비

2.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한 음악회 및 축제 등 개최 비용

⑥·⑦ (현행과 같음)

⑧-----구역 내

제10조(사용료 등) ① (현행과 같음)

②제1항 중-----

③-----

-----범위-----

내에서 사용료의 경우는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동장이 정하며, 수강료의 경우는 동장과 협의하여 위원회가 정한다.

④ ~ ⑥ (생략)

제12조(주민참여) ① (생략)

② 관할구역내의 주민이나 단체는 구청장 또는 동장에게 자치센터의 운영에 대한 참여를 요구하거나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③ (생략)

제13조(수당) 자원봉사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필요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자원봉사자가 아닌 강사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강사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보고) ① 동장은 매년 회계년도 개시 3월전까지 자치센터의 연간 운영계획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동장은 제10조에 의한 사용료 등 자치센터 운영에 따른 수입과 지출내역을 포함한 운영결과보고서를 반기별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당해 반기 경과 후 20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  
-----  
-----

④ ~ ⑥ (현행과 같음)

제12조(주민참여) ① (현행과 같음)

② 관할구역 내-----  
-----  
-----  
-----

③ (현행과 같음)

제13조(수당) -----  
-----범위-----  
-----  
-----범위-----  
-----

제14조(보고) ① -----  
-----3개월 전까지-----  
-----  
-----

② -----따른-----  
-----  
-----  
-----  
-----



2. 공개모집 방법에 의하여 선  
정된 자

③동장은 제2항에 의한 위원 위  
촉시 10인 이내의 “주민자치위  
원 선정위원회”를 구성·운영  
할 수 있으며, 그에 필요한 사항  
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동장  
이 따로 정한다.

④동장은 제2항에 의한 위원을  
위촉함에 있어서 교육계, 언론  
계, 문화·예술계, 관계, 경제계,  
일반 주민 등 각계 각층이 균형  
있게 참여할 수 있도록 위촉하  
되, 어느 한 계층에 소속된 위원  
이 전체 위원의 3분의 1을 초과  
해서는 아니 되며, 특히, 여성위  
원의 참여를 적극 장려하여 전  
체 위원의 3분의 1이상이 되도  
록 노력하여야 한다.

⑤ (생략)

⑥고문은 동장이 위촉하되, 당  
해 동의 관할구역 내에 거주하  
거나 사업장에 종사하는 자로서  
전문적 식견을 갖추었거나 덕망  
이 높은 자를 위촉한다.

제18조(위원장의 직무등) ① ~

④ (생략)

2. 공개모집 방법에 따라 선정  
된 사람

③-----다른 위원  
위촉 시 10명-----  
-----  
-----  
-----  
-----

④-----다른-----  
-----  
-----  
-----  
-----  
-----  
-----  
-----  
-----  
-----  
-----

⑤ (현행과 같음)

⑥-----해  
당-----  
-----종사하는 사람으  
-----  
-----사람을-----

제18조(위원장의 직무등)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위원은 자치센터 운영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자치센터 운영 등과 관련한 각종 교육·연수 등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제19조(간사)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위원중 간사 1인을 지명하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게 할 수 있다.

②동장은 필요한 경우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위원회의 사무처리 등을 지원하게 할 수 있다.

제20조(해촉) ① (생략)

1. 당해 동의 관할구역외에 거주하게 되거나 사업장을 떠나게 된 경우
2. 질병이나 해외여행 등으로 6월이상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 5. (생략)
6. 기타 위원이나 고문으로서 직무를 해태 하였거나 직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 ③ (생략)

제21조(회의) ① (생략)

②제1항에 의한 위원회의 회의개최 통지는 위원장 명의로 한다.

③ ~ ⑤ (생략)

제23조(실비보상등) 고문을 포함한 위원은 무보수 명예직을 원

⑤ 위원은 자치센터 운영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자치센터 운영 등과 관련한 각종 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제19조(간사) ①-----  
-----1명-----  
-----  
-----  
-----

제20조(해촉) ① (현행과 같음)

1. 해당---관할구역 외-----  
-----
2. -----6개월  
이상-----
3. ~ 5. (현행과 같음)
6. 그 밖에-----  
-----

② ~ ③ (현행과 같음)

제21조(회의) ① (현행과 같음)

②-----따른-----  
-----

③ ~ ⑤ (현행과 같음)

제23조(실비보상등) -----  
-----

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4조(시행규칙등)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되, 그 이외의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동장이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  
-----범위-----  
-----

제24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관계법령 발췌

## □ 지방재정법 제32조의2(지방보조금 예산의 편성 등)

② 지방보조금은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 외에는 운영비로 교부(제17조제1항에 따른 지출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수 없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미리 제32조의3에 따른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지방보조금 예산을 편성할 때
2. 지방보조금 관련 조례안을 지방의회에 제출할 때
3. 지방보조금 관련 조례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32조에 따라 지방의회에 의견을 제출할 때
4. 지방보조사업과 관련하여 지방보조금과 지방보조사업자의 재원분담에 관한 사항을 결정할 때
5. 제32조의7에 따른 지방보조사업의 유지 여부를 결정할 때

④ 지방보조금은 공모절차에 따른 신청자를 대상으로 제32조의3에 따른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교부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법령이나 법령의 명시적 위임에 따른 조례에 지원 대상자 선정방법이 다르게 규정된 경우
2. 국고보조사업으로서 대상자가 지정되어 있는 경우
3. 용도가 지정된 기부금의 경우
4.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려는 자의 신청에 따라 예산에 반영된 사업으로서 그 신청자가 수행하지 아니하고는 해당 지방보조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금이 중복 교부되거나 부적격자에게 교부되지 아니하도록 지원이력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⑥ 지방보조금 예산의 편성 및 교부 신청과 교부 결정 등에 관한 그 밖의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4.5.28.]

인천광역시 서구 공고 제2015 -1134 호

## 인천광역시 서구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인천광역시 서구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이를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내용을 「인천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5년 8월 19일

## 인 천 광 역 시 서 구 청 장

### 1. 개정이유

-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바르게살기운동 조직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

### 2. 주요내용

- 바르게살기운동 조직 구성
- 바르게살기운동 조직에 대한 지원 내용

### 3. 의견제출

이 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5. 9. 9.(수)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나 구두 의견을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참조 : 총무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우)22726 인천광역시 서구 서곶로 307(심곡동) / ☎ 032-560-4515,  
FAX 032-560-2710 ]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 4. 참고사항

- 인천광역시 서구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안)

# 인천광역시 서구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안

## 1. 의결주문

인천광역시 서구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별지와 같이 제정한다.

## 2. 제정이유

- 「지방재정법」개정으로 바르게살기운동 조직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

## 3. 주요내용

- 바르게살기운동 조직 구성
- 바르게살기운동 조직에 대한 지원 내용

## 4. 참고사항

- 가. 제 정 안 : “별지 참조”
- 나. 신.구조문대비표 : “해당 없음”
- 다. 예산수반사항 : “해당 없음”
- 라. 관계 법령 발취 : “별지 참조”

## 인천광역시 서구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법」에 따라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봉사하는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의 육성과 사업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바르게살기 정신을 계승·발전시키고 밝고 건강한 사회를 만들어 구정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이란 바르게살기운동 서구협의회와 그 회원단체(동 조직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제3조(지원)**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의 육성과 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바르게살기운동의 계승·발전을 위한 각종 바르게살기사업의 추진
2.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의 운영 및 활동 경비
3. 바르게살기운동조직 회원 교육 및 훈련 경비
4. 그 밖에 바르게살기운동조직 활성화 또는 공익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또는 경비

**제4조(보조금 신청 및 정산)** ① 제3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보조금을 사용하여 사업을 시행할 경우에는 사업완료 즉시 보조사업의 실적과 정산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중복지원의 금지)** 이 조례 시행 후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않는다.

**제6조(국·공유시설의 사용)** ① 구청장은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을 지원·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법」 제4조에 따라 국·공유 시설을 그 용도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이 제1항에 따라 무상사용 중인 공유시설을 그 목적 외에 용도에 사용한 경우에는 그 계약을 해지하거나 사용허가를 취소 또는 철회할 수 있다.

**제7조(지도·감독)** 구청장은 보조금의 적절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소속 공무원에게 관계 장부, 서류 또는 그 사업내용을 검사하게 하거나 감독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제8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지원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관계법령 발췌

## □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법

**제3조(출연금의 지급 등)**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출연금(出捐金)이나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개인, 법인 또는 단체는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을 지원·육성하기 위하여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을 출연하거나 기부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출연금 및 보조금의 교부와 그 사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5.30.]

**제4조(국유시설·공유시설의 사용)**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을 지원·육성하기 위하여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국유시설·공유시설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 □ 지방재정법

### 제17조(기부 또는 보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와 공공기관에 지출하는 경우에만 개인 또는 법인·단체에 기부·보조, 그 밖의 공금 지출을 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에 따른 지출은 해당 사업에의 지출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개정 2014.5.28.>

1.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2. 국고 보조 자원(財源)에 의한 것으로서 국가가 지정한 경우
3. 용도가 지정된 기부금의 경우
4.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2015 - 1160호

## 입 법 예 고 문

「인천광역시 서구 수입증지 조례」를 전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6조 및 제7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5. 8. 24.

##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1. 자치법규명 : 인천광역시 서구 수입증지 조례

2. 개정이유

- 민원인의 수수료 납부 편의를 위해 기존의 수입증지 사용을 중지하고, 전면적인 수입증지 요금계기 사용에 따른 근거규정 마련

3. 주요내용

- 수입증지 요금계기 사용에 따른 전반적인 사항 개정
  - 수수료 납부시 전자적 납부방안 도입근거 마련(안 제3조)
  - 수입증지 수입금 정산에 관한 사항 정비(안 제6조)
  - 종이수입증지 사용폐지 관련 종전 조례의 불필요한 규정 삭제

#### 4. 의견제출

이 조례 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및 개인은 2015년 9월 14일까지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참조: 세무1과장)에게 다음 사항이 기재된 의견서를 서면으로 제출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560-4966)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기타참고사항

##### ※ 의견제출처

- 주 소 : (우404-701) 인천광역시 서구 서곶로 307(심곡동 244)

인천광역시 서구청 세무1과

- 전화번호 : 032)560-4966 (FAX 560-2723)

5. 참고자료 : 인천광역시 서구 수입증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인천광역시 서구 조례 제 호

### 인천광역시 서구 수입증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서구 수입증지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인천광역시 서구 수입증지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서구 수입증지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수입증지”란 인천광역시 서구(이하 “구”라 한다)가 특정인에게 제공하는 사무에 대하여 반대급부로서 징수하는 수수료를 수입증지요금 계기를 통하여 영수증 형태로 발행한 증표를 말한다.
2. 수입증지요금 계기(이하 “계기”라 한다)란 인증기, 무인민원발급기, 각종행정정보시스템(이하 “민원처리기기”라 한다)으로 수입증지 납부 표시를 인영하는 기기를 말한다.

**제3조(수입증지에 따른 납부)** ① 구에 납부하는 수수료는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입증지로 납부하여야 한다.

- ②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제1항에 따른 수입증지 납부를 현금, 신용카드,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 전자결제등으로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제4조(수입증지의 규격 및 색채)** ① 수입증지의 규격과 색채는 다음 각 호 및 별표 1과 같다.

1. 규격 : 가로 30mm 이내, 세로 30mm이내

2. 색채

가. 수동인증기 : 초록색

나. 무인민원발급기, 민원처리기기 : 검은색

② 민원처리기기와 무인민원발급기를 이용하여 발급하는 각종 증명에는 제1항에 따른 전자이미지화한 수입증지가 표시되어야 한다.

**제5조(계기의 사용 및 관리)** ① 계기를 사용하여 수입증지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선명하게 표시되도록 하여야 한다.

1. 발행기관명

2. 수입증지 요금

3. 발행연월일

4. 계기 고유번호

② 구청장은 제3조제1항에 따른 수입증지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계기의 관리 책임자를 각 사용부서의 장으로 지정하여 설치기관명·설치장소·계기 고유번호·사용개시일 등 필요한 사항을 구보 또는 구 홈페이지에 고시하여야 하며,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계기 관리대장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6조(수입금의 납입 및 정산)** ① 제3조에 따른 수입증지 수입금은 그 다음 날 까지 구 금고에 납입하여야 한다. 다만, 무인민원발급기 수입금은 15일 이내에 납입하여야 한다.

② 신용카드 및 전자화폐,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된 수입금은 카드사 등으로부터 입금된 날의 다음 날까지 구 금고에 납입하여야 한다.

③ 수입증지 수입금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수입증지 발행 관리 대장을 작성하고, 일일전표 등을 첨부하여 일일결산하여야 하며, 결산 서류는 5년 간 보존하여야 한다.

④ 계기의 고장 및 그 밖의 사유로 잘못 발행된 수입증지는 결손 처리하고, 잘못 발행된 수입증지 표시 면을 첨부하여 수입증지 발행금액과 수입

금액의 차액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

**제7조(무인발급기 준비금)** ① 무인발급기 관리책임자는 무인민원발급기 운영 개시일에 증명서 발급에 필요한 거스림돈(이하 “준비금”이라 한다)을 무인발급기에 넣어 두어야 하며,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준비금은 세출예산에서 지출하고, 무인민원발급기에 항상 남아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무인민원발급기의 폐기·이전 등으로 무인민원발급기를 사용하지 않게 된 때에는 준비금을 지체 없이 세입조치하여야 한다.

**제8조(변상책임)** 수입증지 발행에 따른 수입금을 관리하는 직원에 대한 변상책임 등은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4조부터 제7조까지를 준용한다.

## 부 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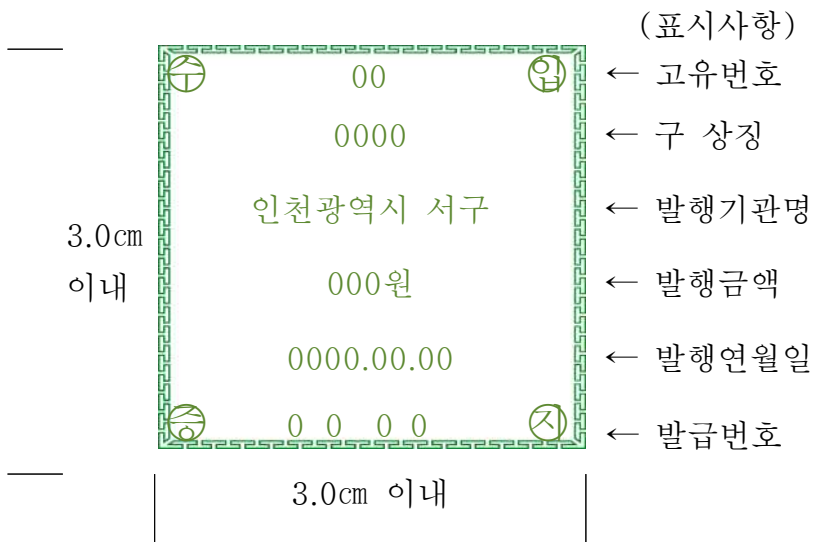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종이 수입증지의 폐기)** 이 조례 시행 전에 제작·보관 중인 종이 수입증지는 이 조례의 시행과 함께 폐기한다.

**제3조(경과조치)** 종이 수입증지를 보관하고 있는 자는 오손 또는 훼손되어 환매가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2016년 1월 31일까지 별지 제4호서식의 수입증지 환매청구서에 따라 구청장에게 환매를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환매 가격은 액면 금액의 100분의 95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하고, 10원 미만은 계산하지 아니한다.

[별표 1]

## 수입증지 규격 및 색채(제4조 관련)



1. 규격은 가로 3.0센티미터 이내, 세로 3.0센티미터 이내로 한다.
2. 모양은 테두리가 있는 사각형으로 하고, 구의 특색 또는 상징을 도안으로 넣을 수 있으며, 색채는 초록색으로 한다.  
(다만, 무인민원발급기 및 민원처리기기의 경우 검은색으로 할 수 있다)
3. 표시사항의 위치는 변경할 수 있다.









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2015 - 1161호

## 입 법 예 고 문

「인천광역시 서구 수입증지 조례 시행규칙」을 폐지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6조 및 제7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5. 8. 24.

##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1. 자치법규명 : 인천광역시 서구 수입증지 조례 시행규칙

2. 폐지이유

- 기존의 종이수입증지 사용이 중지되고, 수입증지 요금계기에 의한 전자적 납부방안을 도입하기 위해 「인천광역시 서구 수입증지 조례」를 개정함에 따라 불필요해진 시행규칙은 폐지

3. 주요내용

- 종이수입증지 사용중지에 따라 시행규칙 폐지  
(단, 무인발급기 수입금 정산·준비금 규정은 조례에 신설)

#### 4. 의견제출

이 조례 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및 개인은 2015년 9월 14일까지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참조: 세무1과장)에게 다음사항이 기재된 의견서를 서면으로 제출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560-4966)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기타참고사항

##### ※ 의견제출처

- 주 소 : (우404-701) 인천광역시 서구 서곶로 307(심곡동 244)

인천광역시 서구청 세무1과

- 전화번호 : 032)560-4966 (FAX 560-2723)

5. 참고자료 : 인천광역시 서구 수입증지 조례 시행규칙 폐지규칙(안)

인천광역시 서구 규칙 제 호

## 인천광역시 서구 수입증지 조례 시행규칙 폐지규칙(안)

인천광역시 서구 수입증지 조례 시행규칙은 이를 폐지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